

임실군의회 입법예고 공고 2025-47호

임실군의회 김왕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임실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 수당 지급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9월 16일

임실군의회의장



1. 제정이유

임실군에 거주하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 수당을 지원하여 이들의 예우와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규정(안 제1조 ~ 제2조)
- 나. 수당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에 관한 규정(안 제3조)
- 다. 수당 지급신청 및 결정에 관한 규정(안 제4조)
- 라. 수당 지급 및 지급중지, 환수 등에 관한 규정(안 제5조~제7조)
- 마. 수당 지급대상 관리에 관한 규정(안 제8조)
- 바. 시행규칙에 관한 규정(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제출기한: 2025년 9월 21일까지
- 나. 제출방법: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1) 주 소: (55927) 임실군 임실읍 수정로 30, 임실군의회(의회사무과)
 - 2) 전 화: 063-640-2883, 팩스 063-640-2699
 - 3) 전자우편: charity81@korea.kr

4. 제정안: 붙임

임실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 수당 지급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이하 “유족”이라 한다)”이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2. “수당”란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및 지급금액) ① 수당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유족으로 한다.

1. 유족 중 자녀·손자녀(孫子女) 및 증손자녀
 2. 수당 신청일 기준 임실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유족
 3. 법 제5조에 따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의에서 발급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족등록 통지서를 소지한 유족
- ② 지급금액은 임실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10만원으로 한다.

제4조(지급신청 및 결정) 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한다.

③ 군수는 지급대상 적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이유를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④ 수당 지급신청은 1회로 하고 매년 재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제5조(수당지급) ① 수당은 매월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급대상자가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신청인이 지정한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다만, 수당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수당 지급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지급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1. 수당 지급대상자가 사망하거나 또는 관외로 전출한 경우
2. 수당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수당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제7조(환수) ① 군수는 제6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지급된 수당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8조(지급대상 관리) ① 군수는 행정전산망 자료를 통하여 사망·전출 등 수당 지급대상자의 변동자료를 매월 파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유족수당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지급대상자에 대한 변동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임실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 수당 지급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 수당 지급
- 나. 제3조(지급대상 및 지급금액), 제5조(수당지급)

2. 비용추계의 결과

- 가. 추계의 전제
 - 사업비: 128,400천원
 - 지원대상: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자녀·손자녀(孫子女) 및 증손자녀) 107명(2025.2.1.기준)

시군	참여자	유족			
		합계	자	손	증손
임실군	39	107	1	43	63

- 지원내용:
 - 유족에게 매월 10만원 지급(100천원×107명×12개월=128,400천원)
- 나. 추계 결과
 - 2026년~2030년: 128,400천원×5년=642,000천원
- 다.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연도별 비용추계표 참조

3. 재원조달방안

- 총 소요예산: 642,000천원(균비 642,000천원)

4. 작성자

- 김왕중 의원

붙임 : 연도별 비용추계표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6년)	2차년도 (2027년)	3차년도 (2028년)	4차년도 (2029년)	5차년도 (2030년)	계
세 입		128,400	128,400	128,400	128,400	128,400	642,000
군 비		128,400	128,400	128,400	128,400	128,400	642,000
세 출		128,400	128,400	128,400	128,400	128,400	642,000
수당지급		128,400	128,400	128,400	128,400	128,400	642,000
재원 조달							
자체 수입	소 계	128,400	128,400	128,400	128,400	128,400	642,000
	군비	128,400	128,400	128,400	128,400	128,400	642,000
지방채							
기 금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란 1894년 3월에 봉건체제를 개혁하기 위하여 1차로 봉기하고, 같은 해 9월에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2차로 봉기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농민 중심의 혁명 참여자를 말한다.
2. “유족”이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자녀·손자녀(孫子女) 및 증손자녀·고손자녀를 말한다.

제3조(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①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 여부의 결정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삭제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유족 대표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유족 등록) ① 유족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유족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받으면 이를 등록 신청을 받은 연도의 다음 연도 12월 말까지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9.>

③ 삭제